

# 중대재해수사과 및 지역협력과(부정수급조사팀)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시청 중대재해수사과 및 지역협력과(부정수급조사팀) 출입문 및 사무공간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6. 30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시청장

- 행정예고내용: 중대재해수사과 및 지역협력과(부정수급조사팀) 출입문 및 사무공간 내 CCTV설치에 따른 의견 청취
- 설치목적: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,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
- 관련근거
  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·운영 제한)
  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  -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- 공고기간: 2026. 6. 30.(화) ~ 7. 20.(월)(21일간)
- 공고방법: 부천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el.go.kr/bucheon>)

## 6. 설치장소

연번	설치장소(예정)	설치	비고
1	중대재해수사과 및 지역협력과(부정수급조사팀) 사무실 내	4대	
2	중대재해수사과 출입문	1대	
3	지역협력과(부정수급조사팀) 출입문	1대	

※ '중대재해수사과' 주소: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177번길 11, 정우제이클래스중동 2층

※ '지역협력과(부정수급조사팀)' 주소: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177번길 11, 정우제이클래스중동 2층

## 7. 의견제출

중대재해수사과 및 지역협력과(부정수급조사팀) 출입문 및 사무공간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위치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. 7. 20.(월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시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간: 2026. 6. 30. ~ 2026. 7. 20. (21일간)

※ 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

나. 제출방법: 직접 방문 또는 팩스(FAX 0503-8803-0147)

다. 기재내용: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연락처, 주소,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라. 제출장소: 부천시 석천로 207, 2층 지역협력과 운영지원팀

마.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: 부천시청 지역협력과 안윤희(☎ 032-714-8718)

붙임 행정예고 의견제출서 서식 1부. 끝.

[붙임] 행정예고 의견제출서

행 정 예 고 의 건 제 출 서				
행정예고		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중대재해수사과 및 지역협력과(부정수급조사팀) 출입문 및 사무공간 내 CCTV 설치		
의견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	
	주 소			
의 건 내 용				
<p>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CCTV설치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6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출자 : (서명 또는 날인)</p>				
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장 귀하				